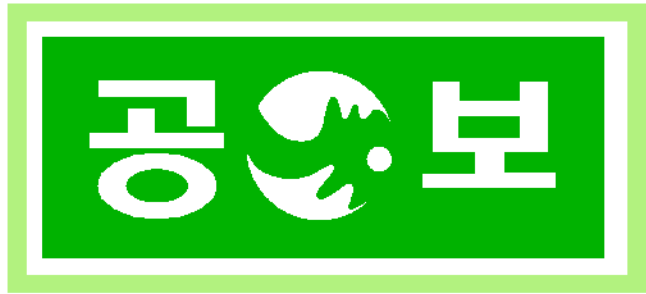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 제 751 호 2012. 4. 19(목)

### 규 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2012-384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48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화봉 지구쌍용예가)승인 고시] .....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49호[도로명주소 고시] .....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50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11

###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306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2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2년 4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 1의 징계기준”을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5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  
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하며, 제2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기”를 “사람이”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 다목 “성희롱”을 “성희롱·성매매”로 하고, 다목을 가목으로 하고, 같  
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미고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	--	--

※ 비고: 제7호에서 “성회봉”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른 성회봉을 말하며, “심대개”란 「심대개안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심대개를 말한다.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4]

##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제7조 4항)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부의 관위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부의 관위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중징계· 중징기	중징기	중징계 (상기·상습적인 경우 : 해임·파면)		해임·파면	
300만원 이상	중징계					

[별표 3]

##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제7조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건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각방	1. 음주운전이라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분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상당빈혈, 신체기능의 영구성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 고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운전직 - 면허취소 : 식전면식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중상계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징역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처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직·처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역·해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우리 시의 반부패·청렴대책을 근거로 성매매징계기준과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
- 청렴의무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성매매와 음주운전이 징계기준에 포함됨 (별표 1 제7호)

- (현행) 성폭력, 성희롱 → (개정)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나. 금품·향응수수관련 처분기준 강화 (별표 4)

- 의례적인 경우 : (현행) 경징계 ⇨ (개정) 중징계
-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현행) 경징계 → (개정) 중징계
-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현행) 중징계 ⇨ (개정) 해임·파면

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별표 5)

- 음주운전 1회 적발 : (현행) 경고 ⇨ (개정) 견책·감봉
- 음주운전 2회 적발 : (현행) 경·중징계 ⇒ (개정) 정직·강등
- 음주운전 3회 적발 : (현행) 중징계 ⇒ (개정) 해임·파면

※ 이 규칙 시행 이후부터 음주운전횟수 산정·적용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12-48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화봉쌍용예가)승인 고시

케이비부동산신식(주) 대표 손영환이 신청하는 울산광역시 복구 화봉동 146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이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4월 19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사업시행자

-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2) 사업주체
  -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 나. 성 명 : 케이비부동산신식(주) 대표 손영환
-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화봉동 1463번지

#### 2. 사업개요

사업종류	구 분	승 인 내 용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다지면적	51,031.90㎡	51,031.90㎡	
	건축면적	10,105.32㎡	10,239.98㎡	변경
	연 륜 적	74,025.96㎡	73,967.97㎡	변경
	건 폐 율	19.80%	20.07%	변경
주택건설사업	용 조 비	115.13%	115.04%	변경
계획변경승인	동수(주/구)	16동/8동	16동/8동	
	세 대 수	487세대	487세대	
	시 알 비	164,081,064천원	143,579,003천원	변경
	사업기간	2012.3 ~ 2013.11	2012.5 ~ 2013.12	변경
	주택형별	일반 민영아파트	일반 민영아파트	

2. 사업시행기간 : 2012. 05 ~ 2013. 12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억제 등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동법 제9조 「건축신고」, 동법 제15조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하수도법 제16조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한 억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승인관련 서류 : 복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허관계인에게 누은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19-7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 49호

###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32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시적과 (☎052-219-7283)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세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4.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지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수·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광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순번	주소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어룡동 974	울산광역시 북구 어룡1길 232 (어룡동)	2004-08-03	어룡마을 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에 위치하는 도로명 부여	
2	울산광역시 북구 인영동 355-13	울산광역시 북구 인영로 110-1 (인영동)	2001-03-22	산악 지역을 피영추진 프로젝트 부여	
3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68-7	울산광역시 북구 인호로 27-10 (중산동)	2004-08-09	노선 자연미올린 호호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	
4	울산광역시 북구 내곡동 292 /	울산광역시 북구 내곡로 110 (내곡동)	2011 08 18	비산출동 호호마을내 호호마을에 위치하여 호호마을내 호호마을	
5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80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로 505 1 (양정동)	2001 03 22	호호마을내 호호마을에 위치하여 호호마을내 호호마을	
6	울산광역시 북구 임천동 600-1 /	울산광역시 북구 임천시가지 6-13 (임천동)	2004-08-09	호호마을내 호호마을에 위치하여 호호마을내 호호마을	
7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16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로 3 1 (양정동)	2007 01 05	호호마을내 호호마을에 위치하여 호호마을내 호호마을	
8	울산광역시 북구 내곡동 629-1 829-5	울산광역시 북구 내곡로 105 (내곡동)	2004-08-09	호호마을내 호호마을에 위치하여 호호마을내 호호마을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 50호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73-1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면적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75	산성로 73	산성로 73 1	2012. 4. 23	지번분할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19-7283)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usc.go.kr](http://www.usc.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4.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제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306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사상생활폐기물 처리실태 점검결과 나타난 소량의 공사상생활폐기물 배출, 공휴일 확인증 발급지연 등 주민불편 문제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항 일부를 심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 제1항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관련 단서부분 추가
  - 별지2호 시식 변경
  - 별지2-1호 시식 신설

**3.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5.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환경비화과장,  
전화:052-219-7384, FAX:052-219-7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참고사항**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별지2-1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내역(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2를 별지의 같이 하고, 별지 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